

1. 개정이유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 따라서 무상수리 계획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에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에 낙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동안 시정권고만 하였던 판스프링에 대하여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토록 자동차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검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시야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서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와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이 떨어진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및 재봉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에 이륜차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여 정기검사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자등이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알리도록 함(안 제49조의7제2항)

1)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사항을 하위법령에도 반영

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22호 및 별지 제24호)

1)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의 구비서류, '제원관리통보서'(별지 제24호) 서식의 처리기간 내용을 보완

다. 판스프링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1)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판스프링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만 하던 것을, 부식 또는 절손으로 심한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하도록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라. 리프트 검사 도입(안 별표 18)

1) 현재는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 핏트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 하부 검사시에는 시야가림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함으로써 정확한 하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마. 분실 또는 도난당한 이륜차 번호판 및 번호판·봉인이 떨어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급·부착 가능토록 개선(안 제100조)

1)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지자체 혹은 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지자체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 어디서

나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바. 이륜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4호)

1)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고, 사용자 유의사항란에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설명 추가

사.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및 인증서로 개정(안 제153조의2)

1)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개정하여 여러 다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편으로”를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호부터 제21호”를 “제20호부터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제100조제3항 전단 중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멸실, 분실하거나 도난당”을 “멸실”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로, “신청”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도난신고확인서”로 한다.

제15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

별표 15 제2호가목 항목 9) 및 제2호나목 항목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완충장치	가) 균열·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속업쇼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나) 부식·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	판스프링의 설치상태 확인

별표 1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검사업무의 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검사장 시설 (핏트 또는 리프트)	면적	핏트: 65㎡ 이상 리프트: 60㎡ 이상	핏트: 36㎡ 이상 리프트: 32㎡ 이상
	검사진로 (길이×너비×높이)	핏트: 13m×5m×4m 이상 리프트: 12m×5m×4m 이상	핏트: 9m×4m×2.5m 이상 리프트: 8m×4m×4m 이상
	핏트 (길이×너비×깊이)	8m×0.8m×1.5m 이상	5m×0.7m×1.5m 이상
	리프트 (길이×너비×상승높이×용량)	4m×2m×1.5m×4,000kgf 이상	4m×2m×1.5m×4,000kgf 이상
	진입·진출로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검사용 기계·기구	사이드슬립측정기	허용측중 10,0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측중 1,5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제동시험기	허용측중 10,0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측중 1,5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속도계시험기	허용측중 10,0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측중 1,5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것 1대 이상	대 이상
	전조등시험기	1대 이상	
	전자장치진단기	1대 이상	
	배기가스(Co/Hc) · 공기과잉물측정기	각 1대 이상(검용의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매연측정기	1대 이상	
	매연 포집시설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로서,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일 것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소음측정기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	
	영상촬영용사진기	1대 이상	
	절연저항시험기	1대 이상(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	기타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영상보관용단말기	
	주행검사기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사무실	면적	10㎡ 이상(다른 사무실 겸용가능)

주: 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검사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사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 검사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핏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사용 기계·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측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부 칙

6.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택시미터주행검사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9.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배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택시미터주행검사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지정정비사업자는 그밖에도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7.6.7>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신 청 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 동 차	차 명		형 식	
	차 종		원 동 기 형 식	
	제원관리번호		검사신청대수	
검 사 받 을 장 소				
차 대 번 호 내 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기술검토서 사본 1부 2. 자동차제원표 및 외관도 각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합니다) 4.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7.6.7>

제원통보서				
제 작 자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차 명		형 식	원동기형식	
변경전차종 제원관리번호		최 초 자 동 차		
		제 작 자		
		차대번호군 (1~8째자리)		
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작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자동차제원표 1부				
2. 자동차외관도 1부				
3.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통 보 하 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7일 이내
수 수 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제	호
이 룰 자 동 차 사 용 신 고 필 증	
년 월 일	
읍장 면장 인 동장	

33331-06261일 74mm×105mm

96.10.4 승인 (보존용지(1종) 120g/m²)

사용자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주소변경의 경우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전기이륜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입니다.
○ 이륜자동차를 튜닝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 읍·면 동장은 본 증명서를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한다.

(제3쪽)

1. 제원(구조)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호			
차명(형식)		원동기형식	
총 중 량		기 통 수	
배 기 량		연 식	
길 이		높 이	
너 비		승 차 정 원	
적 재 량		원동기마력	
비 고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4쪽)

2-1. 검사유효기간				
연월일 부터	연월일 까지	검사시행 장소	주행거리	검사책임 자확인
2-2. 튜닝(구조·장치변경) 사항				
순 위	튜닝 승인 연 월 일	튜닝내역	승인기관	확인연월일 확인자⑩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5쪽)

3. 신고(변경사항)			
이륜자동차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주 소	신고연월일 확인기관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6쪽)

4. 정비(운행정지)명령사항			
순위	정비(운행정지) 명령내역	명령일자	확인일자 확인기관 ㉠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권고할 수 있다.

1. ~ 18. (생략)

<신 설>

19. ~ 21. (생략)

③ ~ ⑥ (생략)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② (생략)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
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
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에는 지체없이 해당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
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
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
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
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
증”으로 본다.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 분
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
· 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

_____.

1. ~ 18. (현행과 같음)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 22. (현행 제19호부터 제
21호까지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
착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장 · 군수 -----

[illegible]

④ ----- 멀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을 -----

판의 부착·봉인을 <u>신청</u>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u>도난신고확인서</u>(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 ⑦ (생략)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u>신청</u>하여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 --. 1. (현행과 같음) 2. ----- -- <u>도난신고확인서</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